

1. 개정이유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1호, '23. 8. 16. 공포, '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당성조사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13조제2항)

타당성조사 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정함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13조의2 제1항, 제2항)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정함

다. 석재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함(안 제13조의2제3항)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목적, 시설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함

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범위·기준의 내용을 절차에 맞게 명확히 함(안 제13조 관련 별표6)

현행 타당성조사 대상인 육성계획은 타당성조사 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절차에 맞게 사업계획서로 변경하고, 범위·기준을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타당성조사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의3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조사 기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석재사업진흥지구의 사업계획서(가공·채취지 등 계획별 위치 및 면적과 이용·시설·생산 등 운영계획, 운영기간, 기반시설 및 확충계획, 공급계획, 장비인력 보유현황 등을 포함한다) 1부
2. 석재산업진흥지구 신청지 내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3. 석재산업진흥지구 환경피해저감 및 피해·재해방지계획 1부
4. 석재산업진흥지구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

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그 밖에 타당성조사 기관이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1부(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재사업자가 신청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에
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산지관리법」 제25조의5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 검토에
필요한 지정목적, 위치, 면적이 표시된 서류(「산지관리법」 제25조
의3제1항제5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육성계획 1부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석재산
업진흥지구 지정 관련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협의대상 및 협의내
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2. 석재산업진흥지구 운영·시설 및 공급계획(가공·채취지 등 계획별 위치 및 면적과 이용·시설·생산 등 운영계획, 운영기간, 기반시설 및 확충계획, 공급계획, 장비인력보유현황 등을 포함한다)

3. 석재산업진흥지구 환경피해저감 및 피해·재해방지계획

4. 석재산업진흥지구 운영효과 및 기대효과

별표 6의 제1호 조사항목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하고, 같은 란 가목 3) 중 “전통 석재제품”을 “석재제품”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육성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 조사항목란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조사항목란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조사항목란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하며, 같은 란 가목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한다.

- 1) 규모의 적정성 및 타당성
- 2) 제한사항 및 타당성
- 3) 내용의 타당성 및 가능성

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타당성조사) 영 제19조제1 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 정에 관한 타당성조사(이하 “타 당성조사”라 한다)의 범위·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u><신 설></u>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타당성조사) ① ----- ----- ----- -----. ② <u>타당성조사 신청은 별지 제21 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의3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관(이하 “타 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에 제 출하여야 한다.</u> <u>1. 석재사업진흥지구의 사업계획 서(가공·채취지 등 계획별 위치 및 면적과 이용·시설·생산 등 운영계획, 운영기간, 기반시설 및 확충계획, 공급계획, 장비인력보 유현황 등을 포함한다) 1부</u> <u>2. 석재산업진흥지구 신청지 내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 역서 1부</u> <u>3. 석재산업진흥지구 환경피해저 감 및 피해·재해방지계획 1부</u>

〈신 설〉

4. 석재산업진흥지구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그 밖에 타당성조사 기관이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3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1부(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재사업자가 신청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약에 필요한 서류 1부

3. 「산지관리법」 제25조의5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 검토에 필요한 지정목적, 위치, 면적이 표시된 서류(「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서 1부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육성계획 1부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관련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협의대상 및 협의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은 별지 제23호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2. 석재산업진흥지구 운영·시설 및 공급계획(가공·채취지 등 계획별 위치 및 면적과 이용·시설·생산 등 운영계획, 운영기간, 기반시설 및 확충계획, 공급계획, 장비인력보유현황 등을 포함한다)

3. 석재산업진흥지구 환경피해저감 및 피해·재해방지계획

4. 석재산업진흥지구 운영효과 및 기대효과

【별표 6】 (생략)

【별표 6】 (현행과 같음)

조사항목	범위·기준	방법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필요성	가. (생략) 1)~2) (생략) 3) <u>전통 석재제품의 제조·가공 및 이용 현황</u> 나. <u>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한다)과 종합계획의 상호 연계성 및 정합성</u> 다. <u>육성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u> <신설>	(생략)
2. 지정대상 지역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의 적합성	가.~라. (생략)	(생략)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가.~라. (생략)	(생략)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u>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피해 및 재해발생 내용</u> 나. (생략)	(생략)

조사항목	범위·기준	방법
1. 지정 또는 변경	가.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석재제품</u> ----- ----- 나. <u>석재산업진흥지구의 사업계획</u> ----- ----- 다. <u>사업계획의</u> ----- 1) <u>규모의 적정성 및 타당성</u> 2) <u>제한사항 및 타당성</u> 3) <u>내용의 타당성 및 가능성</u>	(현행과 같음)
2. 지정 또는 변경	가.~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지정 또는 변경	가.~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지정 또는 변경	가. ----- -----지정 또는 변경 ----- -----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 조사 신청서

첨부서류	1. 석재산업진흥지역의 사업계획서(가공·제취 등 계획별 위치 및 면적과 이용·시설·생산 등 운영계획, 운영간, 기반시설 및 학습계획, 공급계획, 정비면적보유현황 등을 포함한다) 1부 2. 석재산업진흥지구 신청지 내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3. 석재산업진흥지구 환경피해저감 및 피해·재해방지구획 1부 4. 석재산업진흥지구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제공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그 밖에 타당성조사 기관이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타당성 조사 →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통보
신청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석재사업자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지판자지단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식재산업 진흥지구	면적 m ² (ha)	위치
--------------	---------------------------	----

「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식재
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행위 규하

첨부서류	1.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1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식재사업자가 신청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호1로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 등에 필요한 서류 1부 3. 「산지관리법」 제25조의5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 검토에 필요한 지정목적, 위치, 면적이 표시된 서류(「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호5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육상계획 1부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 등 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관련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협의대상 및 협의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	--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관계기관 협의
	→		→	검토·심의
	→		→	결과통보

신청인	사.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신 설〉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석재사업자)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석재사업자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석재산업	면적 m^2 (ha)	위치	
진흥지구	신청목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관계기관 협의
			→ 검토·심의
			→ 결과통보
신청인	석재사업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